

2023년도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사업목적

- 디지털미디어 분야 ICT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신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융합서비스 기술개발

□ 공고기간 : 2023. 1. 16.(월) ~ 2023. 2. 17.(금)

- 접수기간 : 2023. 1. 20.(금)~2023. 2. 17.(금) 15:00시까지
※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 과제 유형에 따라 21개월 ~ 33개월
- 지원규모 : 총 4개 과제, 과제당 총 7억원~11억원 이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규모	주관기관	23년 신규과제
Leader형	국내시장선도 미디어분야 보유기술 기반 서비스 R&D 지원, 사업화 연계지원	2년 (21개월)	7억원 이내 (3억+4억)	중소벤처 기업	2개
Frontier형	해외진출 미디어분야 최적화 서비스 R&D 지원, 사업화 연계지원	3년 (33개월)	11억원 이내 (3억+4억+4억)	중소벤처 ·중견기업	2개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분야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후 신청 접수 및 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신규과제 지원예산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재원	'23년 신규 예산	'23년 신규 과제수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일반회계	1,200	4

□ 신규과제 대상 내용

- 디지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중견 ICT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신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분야	내용	총 수행기간	지원 규모	공모 방식	연구 단계	주관연구 개발기관	과제 수
리더 (Leader)형	국내 미디어 분야 보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R&D 및 사업화	2년 이내 (21개월)	과제별 3억원 이내 (총 7억원 이내)	자유 공모	개발	중소·벤처 기업(법인)	2
프론티어 (Frontier)형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미디어 분야 서비스 R&D 및 사업화	3년 이내 (33개월)	과제별 3억원 이내 (총 11억 이내)	자유 공모	개발	중소·벤처 ·중견기업 (법인)	2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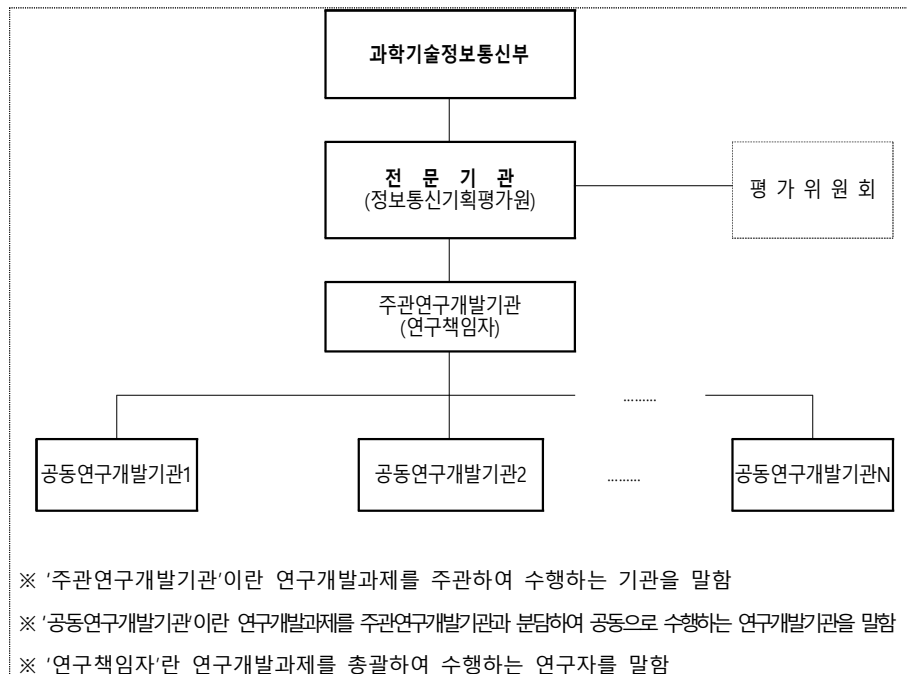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제안요구서(RFP, 품목지정서, 사업설명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 IRIS 홈페이지(<https://www.iris.go.kr>)를 참조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제안요구서(RFP, 품목지정서, 사업설명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 지원 제외됨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품목지정서, 사업설명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23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3.4월~12월(9개월)로 하되, 과제별로 상이하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3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 추진내용

가. 사업추진체계



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신청자격
중소·벤처·중견기업 (법인)	○ (주관) 접수마감일 기준 미디어 관련 R&D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 (법인에 한함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미디어 분야 R&D결과물(국가/기관자체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연(연), 대학, 연구소, 타 기업 등으로부터 관련기술을 이전받은 기술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 ○ (공동) 기업(법인), 대학, 출연(연) 등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필수 사항은 아님)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마.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2.4.5 ~ '23.4.4)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 ~ '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포함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7월 1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다만,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사. ICT R&D 졸업제 적용

○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19.2.13일 시행) * 단,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졸업제 대상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4. 과제 신청 유의 사항

가. 사전지원제외의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화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받은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 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경우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다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3. 마.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바.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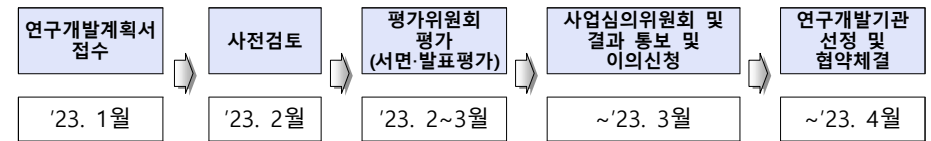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3. 1. 16.(월) ~ 2023. 2. 17.(금) 오후 3시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디어콘텐츠팀(042-612-8532)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항목

구분	Leader형		Frontier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점)	① 신청분야(기술)의 적정성 및 미디어 관련 기술 등과의 융복합 가능성·혁신성	10점	① 신청분야(기술)의 적정성 및 미디어 관련 기술 등과의 융복합 가능성·혁신성	10점
	②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10점	②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10점
	③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점	③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점
	④ 미디어 관련 R&D 기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소속기관의 내재화	10점	④ 미디어 관련 R&D 기보유 기술의 우수성 및 소속기관의 내재화	10점
사업성 평가 (60점)	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시장·수요자 분석의 적절성	15점	①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시장·수요자 분석의 적절성	15점
	②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점	② 글로벌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점
	③ 실증테스트, 인증, 서비스 출시 등 기한 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15점	③ 실증테스트, 인증, 서비스 출시 등 기한 내 글로벌 시장진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15점
	④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가능성	15점	④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가능성	15점
	합계	100점	합계	100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 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5점 이내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0~'22 선정기업)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1점)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메뉴얼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을 수 있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u>‘23.1.16(월) ~ ‘23.2.17(금) 오후 3시까지</u>	<u>‘23.1.20(금) ~ ‘23.2.17(금) 오후 3시 까지</u>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일 15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5시) 이후에는 전산등록(제출) 불가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신청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인 단독·미응모 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2023. 3. 3(금) 오후 3시까지)	

▶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HWP 파일)	범부처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go.kr) 전산등록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전자파일 (PDF 파일)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만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날장) 날인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중 기업만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9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10	R&D 결과물 증빙서류 (주관연구기관 보유소유의 R&D결과물)			접수마감일기준 기수행한 R&D과제의 특허, 최종보고서 등
	기술이전계약서 증빙서류 (주관연구기관 보유소유의 기술이전 계약서 등)			접수마감일기준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관련기술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벤처·중소·중견 기업확인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
12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위탁) 각각 제출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과제당 1개 작성 및 제출 (자유공모 사업만 제출) * 신청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의 유사과제를 검색(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검색)하여 결과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1년, 2022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2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2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기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조치 필요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 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의 기재 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7.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내 용
일 시	2023년 1월 17일 (화) 14:00~16:00
장 소	서울특별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301호
주요내용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 '22년도 수행기관의 참여 후기

8.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1877-2041(IRIS 콜센터)
과제 내용 및 사업 관련 전반적 문의	IITP 미디어콘텐츠팀(042-612-8532)